

의안 번호	2032	【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발 의 일 자: 2022. 12. 2.(금)
- 발 의 자: 김태욱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2. 12. 9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2. 12. 20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안전보안관 위촉, 교육, 임기(안 제3조 ~ 제4조)
-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, 활동(안 제5조 ~ 제6조)
-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, 관리, 해촉(안 제7조 ~ 제8조)

4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

4. 검토의견

-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근거법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[시행 2022. 4. 5.] [법률 제18684호, 2022. 1. 4., 일부개정]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4. 12. 30., 2017. 1. 17.>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- 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
[본조신설 2013. 8. 6.]

[제66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<2017. 1. 17.>]